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제출연월일: 2020. 10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정이유

번호

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 및 원스톱 지원거점 구축을 위해 설립한 중추기관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센터의 사업 내용의 범위(안 제3조)
- 나. 수탁자의 시장 승인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다. 수탁자의 자체 규정에 대한 근거(안 제7조)
- 라. 위탁 운영, 위탁기간,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 등 (붙임)

나. 예산조치 : 2018~2021년 조성사업비 300억원 반영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9. 21. ~ 10. 1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
- 3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5) 갑질영향심사 : 개선의견 2건
 - 가) (항목) 제9조 다목적홀 이용 등 →(감사결과) 제4항 "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"와 관련 하여 용어사용의 적정여부와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자의적 권한 행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용을 재검토요청 → (조치내용) 자의적 권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구체화 및 센터의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센터 홈페이지·게시판에 사전공지·운영
 - 나) (항목) 별표 1 시설물 이용료 → (감사결과) 이용 기준이 1일으로만 되어 있어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이용기준 시간의 세분화와 에너지 시가적용 산출방식 명기 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요청 → (조치내용) 이용 시간 세분화 및 냉난방 이용량은 개별 이용량 검침에 의함 등 내용 추가
- 6) 비용추계서 :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 및 위치) 센터의 명칭은 "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"(이하 "센터"라 한다)라 하고,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7에 둔다.
- 제3조(주요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 - 2.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
 - 3. 콘텐츠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
 - 4.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에 관한 사항
 - 5.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
 - 6.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업
- 제4조(위탁운영)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. 다만,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위탁기간)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②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.

- **제6조(승인)**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 - 1. 센터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 - 2.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
- 제7조(관리규정)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운영의 성과분석) ① 수탁자는 매년 마지막 날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수탁자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다목적홀 이용 등) ① 다목적홀을 이용하려는 자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는 시장 또는 수탁자(이하 "운영자"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납부하여야 하며,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국가,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
 - 2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.
 - 1. 다목적홀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- 2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
 - 3. 이용자가 이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- ④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⑤ 이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.
- 제10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물 이용료(제9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기본이용료	비고			
다목적홀 (150석 규모)	50,000원	 ○ 기본이용료는 평일 4시간 기준금액 - 4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10,000원 추가 ○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 ○ 토요일, 공휴일은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			
냉·난방시설	개별 이용량 검침에 의함	○ 모요일, 8유일은 기본이공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○ 1일은 09:00~22:00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.			

[별표 2]

시설물 이용료 반환기준(제9조제3항 관련)

구 분	반환금액			
○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	○ 납부한 금액 전액			
○ 제10조제3항제3호의 경우	○ 7일전 취소 요청시 전액 반환 ○ 이용전일까지 취소 요청시 -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○ 이용당일 취소 요청시 -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			

관계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-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 -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 - 1.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2.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4.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 ·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·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- 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제12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 - 1.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
 - 2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

- 3.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
 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따 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 사실
 - 나.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, 관 리·감독, 성과 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
- 4. 자치구별 균형분포
- 5.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- 6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
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 및 원스톱 지원거점 구축을 위해 설립한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 하고자 함
- 주요사업
 -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창·취업 지원
 - 유망기업 도약을 위한 스케일업 교육
 -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
 - 글로벌 성장도약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
- 입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
- 다양한 콘텐츠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
- 기타 시민을 위한 이벤트 및 체험강좌 기회 제공

3. 관련조문

○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, 제3조, 제4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민간위탁 운영에 근거하여 산출
- 개관 첫 해인 2021년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추정치로 계상

나. 추계 결과

- 5개년도 전체금액
 - 세입 894백만원(임대료 수입:894백만원)
 - 세출 4,343백만원 (인건비: 660백만원, 관리비 등 1,516백만원,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,166백만원)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편성
- 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- 6. 작성자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정미정

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서	입	40,638	170,680	219,445	231,637	231,637	894,037
- 임대	료 등 수입	40,638 (임대료50%)	,	· /	231,637 (임대료95%)		894,037
서	출	334,132	1,002,400	1,002,400	1,002,400	1,002,400	4,343,732
-행정운영경비		167,466	502,400	502,400	502,400	502,400	2,177,066
· 인건비		50,800	152,400	152,400	152,400	152,400	660,400
• 시	설관리비	1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1,300,000
· 일	반운영비	16,666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16,666
- 프로그	1램 운영 시업비	166,666	500,000	500,000	500,000	500,000	2,166,666
자	l원 조달	293,494	831,720	782,955	770,763	770,763	3,449,695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국 비						
자체 수입	소 계	293,494	831,720	782,955	770,763	770,763	3,449,695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	일반회계	293,494	831,720	782,955	770,763	770,763	3,449,695
7	지 방 채						
7	기 금						
	구・군비						
	기 타 민자, 예비비 등)						